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977

발의연월일: 2023. 2. 13.

발 의 자:위성곤·박찬대·김용민

문진석 · 양정숙 · 윤영덕

김승남 • 이성만 • 이개호

최인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.

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독자적으로 조정하고, 조정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
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23조의8).

법률 제 호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8(조정의 거부 및 중지)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3조의8(조정의 거부 및 중지)
	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
	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
	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
	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
	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	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
	있다.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
	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
	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
	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
	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
	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
	통보하여야 한다.